

노동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022. 1. 20.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 이 해설서는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추후 관련 실무례와 해석 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석은 각 법률원(대표번호 02-2670-9500)에 문의하여 해당 사실 관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이 법’이라고 함)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의 목적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법의 목적이 있음.¹⁾

제2조 정의

[제1호] 중대재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 정의

- 이 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의미임.
- 제2장은 중대산업재해,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고, 제4장 보칙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됨.

[제2호]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이유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²⁾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 사고에 의한 사망 뿐만 아니라 과로사, 직업성암 등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다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아래 시행령 제2조 목록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에 한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할 것, 1년 이내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음.
- ‘동일한 사고’는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동일한 유해요인’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고용노동부 해설서).
-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발생’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고용노동부 해설서).

2) 산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봄(가령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노관 기능 손상, 급성 세노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 시행령에서는 2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근로기준법 내지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비교하여 매우 협소한 목록에 한정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 산안법상 중대재해와 비교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동일함.
- 부상자는 치료기간, 직업성 질병자는 기간과 재해자 수에서 차이가 있음.

	중대산업재해 (이 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 (산안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3조)
정의	산안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산안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안법 등과의 관계

- 이 법과 산안법은 의무 주체 및 의무 내용, 형사책임 주체, 양벌규정 등에서 구별되므로 별도로 성립함.
- 만일 동일인이 산안법 위반과 동시에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당초 제정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 규정을 두었으나 국회를 통과된 이 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음³⁾.

3) 다만 이 법에 우선 적용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조경합(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안법위반죄(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인 이 법이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고소·고발 등 법률대응시에는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적용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구분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무주체	사업주 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의무내용	유해·위험 방지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형사책임 주체	행위자(주로 현장관리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양벌규정	사업주 및 행위자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

[제3호] 중대시민재해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정의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중대산업재해와 비교

- 4) 산안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이 법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제2조 제8호)로서 산안법보다 범위가 더 넓음

-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재해인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제외하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함.
- 재해의 정의와 대상은 구분되지만, 의무 주체 및 의무 내용, 벌칙과 양벌 규정 등은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항목	중대산업재해(제2조제2호)	중대시민재해(제2조제3호)
정의	<p>산안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가. <u>사망자가 1명 이상</u>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u>6개월 이상</u>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u>2명 이상</u>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u>1년 이내에 3명 이상</u> 발생</p>	<p>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운데, 1. <u>사망자가 1명 이상</u>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u>2개월 이상</u>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u>10명 이상</u>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u>3개월 이상</u>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u>10명 이상</u> 발생</p>
의무 주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의무 내용	<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시민재해는 인력, 예산에 더해 ‘<u>점검</u>’도 포함됨</p> <p>(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도급, 용역 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하여 제9조 제2항 조치를 하여야 함

벌칙	사망 재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사망 재해 : 법인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재해 : 법인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7호] 종사자

<p>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목)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목)

- 산안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⁵⁾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반면, 이 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포함됨. 따라서 1) 직종을 불문하며, 2) 복수의 사업, 일시적인 노무제공자도 포함되며,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함.
- 결론적으로 이 법은 산안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달리 직종 제한이

5) 산안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토크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시행일 2021. 11. 19.).

없는 등 법상 보호대상이 확대된 것임.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제4조 부분 참고).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다목)**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급인의 노무제공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제8호] 사업주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사업경영 주체로서 개인사업체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는 법인을 뜻함
- 사기업의 기업주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도 사업주가 될 수 있음. 영리·비영리를 불문하므로 공익사업, 사회사업 또는 종교사업의 사업주도 포함됨.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산안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제2조제4호).
- 반면, 이 법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면 족하므로 산안법상 사업주보다 그 범위가 넓음.
- 예컨대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용관계 내지 고용관계에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1) 산안법상 사업주 여부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따져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2) 이 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함은 명백함.

○ **제2장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주를 뜻함**

- 법 제2장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제2장 이하에서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를 말하고, 회사나 법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이 책임 주체가 됨.

[제9호] 경영책임자등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 경영책임자등에는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됨.
-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5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제6조).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를 말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회생회사의 관리인, 상법상 지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함.
-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므로 임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됨(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 따라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따로 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 그룹 오너 내지 회장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5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석됨(제6조).

○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또는 이에 준하여'라는 문구 해석이 중요함.
- 따라서 단순히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단독으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함.
-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종래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대표이사 등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책임자는 빠져 나가고, 하위 현장관리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음. 이 법은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1) '또는 이에 준하여'라는 명시적 문언과 해석, 2) 이 법의 입법취지 및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여전히 산안법에서 정한 조치의무와 별칙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이하 같음)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도 제2장을 제외한 다른 장의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정부 지원 규정(제16조)은 적용이 됨.
- 5명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음.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3%(22,694명), 사망자의 35%(231명)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5명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0.84, 사망 만인율은 1.28로서 5인-49인 사업장(각각 0.43, 0.72)의 각 2배, 1,000인 이상 사업장(각각 0.21, 0.43)의 각 4배, 3배에 달함⁶⁾.
-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급히 개정해야 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제외한 종사자를 포함하는 경우 5명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만으로는 5명 미만인 경우 제2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정한 입법취지에 심각하게 반하는 상황으로 보임.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6) 고용노동부, 2020.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는 점(파견법 제35조)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와 판단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고,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 따라서 A 법인이 각기 다른 장소에 B와 C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 B와 C 공장이 A 법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B와 C 공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고,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봄.

○ 도급 등이 있는 경우(제5조와의 관계)

-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

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임.

- 따라서 제3자(가령 도급인 등)가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는 법 제2장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됨. 즉 수급인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은 제2장의 규정 등 이 법에 따라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함.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제2조 제8호).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을 말함(제2조 제9호)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제2조 제8호, 제9호 해설 참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사업주, 법인, 기관’이지, 경영책임자등이 아님.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제10조 제2항⁷⁾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⁸⁾ 지배·관리의 의미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법은 ‘지배·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가 부과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산안법보다 넓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거나(지배·관리), 2)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는(운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됨.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적(인력)·물적(예산 등) 기반과 시스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로 이해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도 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7) 산안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8)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3쪽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체계가 작동하도록 ‘이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고 결국 이 법이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함”.
- 위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각호), 가장 먼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및 적용 법령·지침 검토, ▲ 종사자 의견 청취, ▲ 동종업계 재해 발생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9가지 의무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해야 함.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외에도 노무제공자,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의 노무제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과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음.
-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이전 재해 발생 경험,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과정에서 종사자와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완성 후에도 적절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②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

조 제2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산안법상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사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동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 또한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1명 이상을, 나머지 사업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사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함(동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함(동법 제19조, 시행령 제24조).
- 한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함(동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 위와 같이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인력을 총 3명 이상 둘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관한 위 조치의무 조항이 적용됨.

-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됨.
- 아울러 ‘전담’ 조직이기 때문에 안전·보관과 무관하거나 생산 관리, 일반 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시행령 제4조 제3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업무절차의 이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안법상의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위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다만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매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안법상 위험성평가로 위 조치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등이 실시되어야 위 규정상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유해·위험요인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 하되, 제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하거나 적절한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함.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위험요소의 제거·대체, 공학적·행정적 통제, 보호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고용노동부 해설서).

④ 재해예방 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함.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도 의미함. 고용노동부 해설서는 안전보건규칙상 명시된 신호수 배치, 2인1조 규정, 폐기물관리법상 3인1조 규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2인1조 규정 등을 예로 들고 있음.
- 이 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노무제공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부여하고 있는 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지 위한 예산 편성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이와 별개로 이 법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함.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조치 의무를 부여함.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시행령 제4조 제6호)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산안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되, 다른 법령상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 각 업무를 맡은 이들이 무분별한 겸직을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각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⑦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마련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음.
- 다만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24조) 및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동법 제64조), 건설공사도급인이 설치한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동법 제75조)에서의 논의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산안법상 위 각 제도의 적용대상과 절차, 대상이 매우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 중 산안법상 위 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는 없는지, 모든 종사자들이 빠짐 없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기 절차를 보장받는지 주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내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시행령 제4조 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담은 매뉴얼을

-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사업주의 작업 중지 등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가 모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함.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는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함.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고용노동부 해설서).

⑨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시행령 제4조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수급인,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 산재예방 조치 능력,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 ▲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가 적용·시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임.
- 이는 산안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 이행에 한정하지 않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도급받은 업무 관련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점검해야하는 적극적인 규정임.
- 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체적인 내용은 제5조 부분 참조), 법 제4조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다른 규정에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4조 9호 규정을 이유로 해당 규정에 있어서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규정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때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중대재해에 비해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이러한 조치에는 재해의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과 장비, 작업환경 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제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 ‘관계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건설공사 관련 법령 등과 같이,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형 및 특성,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됨.
- ‘시정’뿐 아니라, ‘개선’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도 포함됨.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른 각호의 의무는 '이행에 관한 조치'인데, 제4호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규정함.
- 위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조 제2항).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3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에 관해 규정했지만, 제4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해 규정함. 여기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일체를 의미함.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음(고용노동부 해설서상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이나,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 위 각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점검한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그 결과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법정 의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점검한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그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이 확인되는 경우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미함.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 ‘도급, 용역, 위탁 등’이므로 도급, 용역, 위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도 해당됨.
- 계약의 명칭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나 일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민법 제664조,⁹⁾ 산안법 제2조 제6호¹⁰⁾ 참조).
- 발주자는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공사발주자¹¹⁾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발주자도 이 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9)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0) 산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1)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안법상 도급인에도 해당함.

○ 제3자의 종사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를 말함.
- 종사자에는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관계가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됨(제2조 제7호).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 이 법에 따른 도급인 등의 책임은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제10조, 제63조, 제64조)보다 네 가지 측면에서 넓음. ▲ 첫째, 도급뿐만 아니라, ‘위탁, 용역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됨, ▲ 둘째, ‘지배·관리’ 외에 ‘운영’도 포함됨, ▲ 셋째, 의무발생 요건으로서 지배·운영·관리 대상에는 장소 외에 ‘시설’과 ‘장비’가 추가됨, ▲ 넷째,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임.
- 따라서 이 규정은 1) 장소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에 대하여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2)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법령 또는 계약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 예컨대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제3자의 종사자(근로자 + 노무제공자 + 순차도급에서 수급인)가 작업을 하는 경우는 물론, 수급인 등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① 그 시설, 장비 등이 도급인 등의 소유이거나, ② 그 시설, 장비 등의 운용 및 작동 등에 관하여 도급인 등이 현실적 또는 규범적(법령 또는 계약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본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됨.

구분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제외)	도급인 등(건설공사발주자 포함)
책임영역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책임요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등이 현실적 또는 규범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제4조의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즉,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 이 법 제4조와 제5조는 ① 의무 주체, ② 대물적 적용범위 및 ③ 대인적 적용범위에서 상호 구별됨. 다만 결론적으로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4조의 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음.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즉 제4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5조에 의해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 제4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편입된 종사자의 유해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5조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편입되지 않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됨.
- 한편 고용노동부 해설서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에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음.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행위 주체

- 처벌대상, 형사책임의 주체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임.

○ 행위 및 결과

- (행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야 함.

-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야 함.

○ 인과관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임. 따라서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은 높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직접 겨냥하고 있음.
- 따라서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실제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상 인과관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것임.
- 이 점에서 기존 산안법과 구별되고, 이것이 산안법과 별도로 이 법을 제정한 목적임.

○ 고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본인에게 부과된 의무임. 따라서 현장실무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의무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용될 수 없음. 본인의 의무를 제3자(현장실무자, 하위관리자)에게 전가(위임)할 수 없고, 의무인 줄 몰랐다는 것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님.
-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만 있으면 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이상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법정형 및 재범시 가중처벌

- 사망 재해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 가중처벌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만 있고, 중대시민재해에는 없음.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의 의의

-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경영책임자등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망 재해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재해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기관의 면책요건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음.
- 산안법 제173조에서도 동일한 법인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산안법에서는 행위자가 현장관리자이면 법인의 주의·감독의 주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행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 법인의 주의·감독의 주체는 대표이사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제6조를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기관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점에서 산안법과 궤를 달리함. ‘경영책임자등’보다 상위에 있는 대표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기관이 면책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

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의의 및 취지

- 기업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중대산업재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임.
- 경영책임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기, 과태료 부담 기준을 규정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데,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2차 위반 시 3천만 원, 3차이상 위반 시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만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4장 보칙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정 내용 및 취지

- 산안법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법 제13조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생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시행령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

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시행령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 해당 사업장 명칭, ▲ 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자 수, ▲ 재해의 내용과 원인, 의무위반 사항, ▲ 해당 사업장의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표하도록 함.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면책 요건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 면책 요건의 해석에 관해서는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참조.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제조물 책임법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행위 주체(제조업자 vs. 경영책임자등), 행위 태양(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vs.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 발생 vs. 중대재해 발생),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3배 이하 vs. 5배 이하) 등에서 구별되므로 각각 별도로 적용 가능함.
- 따라서 각각의 요건에 따라 배상청구 가능함.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 시행일 경과 규정(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시행 2022. 1. 27.).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 2024. 1. 27.).
-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법원 관할(부칙 제2조)

-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합의부 심판의 제외 사건에 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도 포함시킴.
- 따라서 이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가능함.

[시행령 보칙] 서면 보관 의무(제13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끝]